

조기취업 공인출석 관련 규정

「학업이수에 관한 규정」 발췌

제11조(시험 및 평가)

- ⑤ 학업성적은 시험성적, 예·복습 및 출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 다만 실험실습,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평가와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성적평가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출석인정)

-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취업처장 또는 대학장(독립학부장)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.

5.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: 해당 기간